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3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임종성

김경협 · 김교흥 · 김병욱

박재호 · 서동용 · 전재수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 주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개편을 통해 주거재생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5호 등).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2조제 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중 제2 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의 범위, 위탁의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	①
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	
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	5
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
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의 감면) ① (생 략)	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중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
	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② (생 략) <신 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사업시행자에게 그 일부 또는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을 갖춘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의 범위, 위탁의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